

광주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18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7나12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4가합69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윤철호, 구희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피고, 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준, 최순규

2.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변론 종결 2024. 7. 25.

판결 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4가합6949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7나12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7,000,000,000원,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D와 각자 위 7,000,000,000원 중 1,844,769,449원,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D와 각자 위 7,000,000,000원 중 27,314,9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D와 공동하여 279,562,177원 중 186,396,826원, 피고 C은 D와 공동하여 279,562,177원 중 27,314,9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① D는 279,562,177원, 피고 B은 D와 각자 위 돈 중 186,396,826원, 피고 C은 D와 각자 위 돈 중 27,314,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D,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각자 40,997,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아래와 같은 D의 불법적인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 횡령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였고, 피고들과 F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과 F이 D의 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그 횡령금이 피고들과 F에 각 귀속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D에 대한 청구 중 320,559,320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인용하였고, 원고의 피고들 및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F에 대하여, D는 원고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 B에 대한 피고들 귀속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새로이 피고 B에 대하여 D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여 ① 주위적 청구로서 D와 피고 B은 공동하여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00,000,000원, D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위 7,000,000,000원 중 27,314,94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원금 부분 청구취지를 1,844,769,449원으로 확장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3) 라.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에게 D, 피고 B은 공동하여 7,000,000,000원, 피고 C은 D와 공동하여 위 7,000,000,000원 중 27,314,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D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D만 상고하였는데, D의 상고장은 2020. 1. 30.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D,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바.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사.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의 2023. 12. 4.자 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23. 12.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 금액 70억 원은 모두 허위공사를 통해 교비를 횡령한 금액에 대한

것이고(1쪽), 원고의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포기한다(4쪽)'고 밝혔으며, 2023. 12. 13. 이 법원 제9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아. 그러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예비적 청구 중 허위공사를 통해 횡령한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E과 피고 B, C은 그 산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학교 및 병원을 설치 내지 인수하여 운영하는 각 학교법인이다.

원고	G대학교	
E	J대학교	
피고 B	H대학교	K병원(H대학교 부속병원) L병원(1997년경 M병원을 인수한 이후 명칭을 변경함)
피고 C	I 대학교	

G대학교	1994. 3. 15.		
J대학교	1995. 3. 17.		
H대학교	1991. 2. 28.	K병원(H대학교 부속병원) L병원(1997년경 M병원을 인수한 이후 명칭을 변경함)	1995.경 1997.경
I 대학교	2005. 3. 4.		

2) D는 원고 및 피고들과 그 산하에 설치된 H대학교(이하 'H대'라고 하고, 나머지 대학교에 대하여도 'G대', 'I대'로 약칭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학교들'이라고 한다) 등을 설립하였고, 2006. 2. 3. 이 사건 학교들의 공사를 전담시킬 목적으로 F을 설립하였다. D는 위와 같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이 사건 학교들, 병원 및 F(이하 '이 사건 학교 등'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처나 친인척 및 지인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두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D의 법인기획실 설치 및 운영

1) D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이 사건 학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N동에 있는 'K병원' 6층에 일명 '법인기획실'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학교 등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즉, D는 법인기획실에 이 사건 학교들의 총장 직인, 교비통장 및 차명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학교들의 수입·지출 기안서,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등을 직접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학교들과 F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직접 결재하였으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외의 모든 거래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또는 자금세탁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학교들과 F의 회계를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학교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2) 법인기획실에는 D 외에 이 사건 학교들로부터 파견받거나 직접 선발한 경리직원 등 약 15명의 교직원이 함께 근무하였는데, O(학교법인 E 산하 J대 사무처장이자 D의 외조카)가 중간관리자로서 D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법인기획실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P(H대 소속)가 D의 지시를 받아 회계와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들의 회계담당자들은 매일 이 사건 학교들에서 받은 자금집행 기안서와 품의서를 토대로 필요자금내역을 정리하여 회계 총괄 P에게 전달하고, P는 이를 취합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교직원 대출금 상환비용, 병원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자금내역과 매일의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작성하였다. 그 후 P는 D에게 위 '자금소요지급내역'을 그날의 각 대학별 잔고현황표와 함께 보고하였고, D가 이를 승인하면 그 결재내역을 법인기획실의 각 대학별 회계담당자에게 통지하였다. 법인기획실에서 근무하던 각 학교별 회계담당자들은 P로부터 통지받은 내역에 따라 각 학교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법인기획실에 보관된 총장 직인을 찍은 후 그 금액의 입출금에 필요한 무통장 입출금전표를 작성하여 P에게 전달하고, P는 이를 취합하여 법인기획실에 보관된 각 학교별 교비통장 및 차명통장 등을 가지고 Q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비 등을 집행하였다.

다. D의 횡령범행

1) D는 위와 같이 법인기획실에 보관시킨 이 사건 학교들의 총장 직인, 교비통장 및 차명통장 등을 이용하고, 법인기획실 회계총괄인 P에게 자금인출 및 집행을 지시하여, 이 사건 학교들이나 F이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및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학교들의 교비 및 F의 자금을 R, S 등 차명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원고 E	2007. 1. 2.부터 2012. 8. 16.까지 2007. 1. 8.부터 2012. 8. 17.까지	40,289,967,900원 14,836,000,000원
피고 B	2007. 1. 9.부터 2012. 8. 17.까지	32,998,660,000원
피고 C	2007. 1. 9.부터 2012. 5. 4.까지	1,558,110,000원
F	2008. 3. 4.부터 2012. 8. 31.까지	10,605,505,000원

2) D는 위와 같이 횡령한 교비 등을 법인기획실에서 통합 회계로 관리하면서 교직원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 비용, K병원과 L병원 운영비, 다른 대학 부지매수 자금, 학교 교직원 벌금납부비용,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학교 관련 분쟁 소송비용 등 교비나 피고 F의 자금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3) D는 2012년과 2013년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학들의 총장 등과 공모하여 약 1,000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9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5. 24.경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575, 562(병합), 583(병합), 2013고합60(병합) → 광주고등법원 2013노318, 504(병합), 2015노174(병합) → 대법원 2015도175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5, 17,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T, 환송 전 당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D의 위와 같은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D의 위 횡령금 중 피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030,766,275원, 피고 C은 2,731,494,61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우선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에 기재한 각 부당이득반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그로써 곧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횡령피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D는 2012년과 2013년경 허위 공사를 통한 교비 횡령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들의 교비와 F의 자금에서 합계 약 1,00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9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5. 24.경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내용에 따르면 D는 이 사건 학교들의 교비와 F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여지급 외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입출금하도록 하고,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들의 회계담당자들은 매일 이 사건 학교들에서 받은 자금집행 기안서와 품의서를 토대로 필요자금내역을 정리하여 회계 총괄 P에게 전달하고, P는 이를 취합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교직원 대출금 상환비용, 병원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자금내역과 매일의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P는 D에게 위 '자금소요지급내역'을 그날의 각 대학별 잔고현황표와 함께 보고하였고, D가 이를 승인하면 그 결재내역을 법인가획실의 각 대학별 회계담당자에게 통지하였으며, 법인가획실에서 근무하던 각 학교별 회계담당자들은 P로부터 통지받은 내역에 따라 각 학교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법인가획실에 보관된 총장 직인을 찍은 후 그 금액의 입출금에 필요한 무통장 입출금전표를 작성하여 P에게 전달하고, P는 이를 취합하여 법인가획실에 보관된 각 학교별 교비통장 및 차명통장 등을 가지고 Q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비 등을 집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학교들 교비의 입출금 방식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한 대학교에서 출금된 교비의 최종적인 종착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3) 원고 산하 대학교뿐만 아니라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도 D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D가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횡령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영 주체를 막론하고 이 사건 학교 등의 교비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 사건 학교 등의 교비나 자금으로는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교직원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 비용, K병원과 L병원 운영비, 다른 대학 부지매수 자금, 학교 교직원 벌금납부비용,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학교 관련 분쟁 소송비용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따라서 원고 산하 대학교에서 횡령된 교비가 그대로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로 입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D의 교비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횡령한 각 교비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금세탁 등을 통하여 비자금으로 섞여졌을 것이므로, 원고의 횡령피해 금원이 계산상 결과적으로 일부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에 귀속된 것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7. 1.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학교들의 자금수지 추정액을 기초로 하여 자금수지가 흑자 구조인 원고로부터 적자 구조인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횡령금이 귀속되었다는 가정에 기초한

회계법인 검토보고서(갑 제2호증)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검토보고서 상의 자금수지 추정액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검토보고서는 원고에 대한 횡령금과 피고들에 대한 횡령금 등이 위와 같이 비자금으로 한데 섞임으로써 원고 산하 대학교의 횡령피해금이 곧바로 피고들에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허술한 가정에 의존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5) 5) D가 일명 '법인가획실'에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의 총장 직인 및 교비통장 등을 보관하고,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의 총장 등이 이를 제공하거나 회계직원을 파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의 교비를 D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행위로서 원고 산하 대학교로부터 허위공사를 통해 교비를 횡령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불어 그 횡령피해금이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에 그대로 입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 총장들이 D의 피고들 산하 대학교별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고, 원고 산하 대학교의 교비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 총장들이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가 횡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각 횡령행위 및 입출금내역의 최종 계산상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 중 일부가 결론적으로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에 귀속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D가 이 사건 학교들 및 F의 교비와 자금을 횡령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결과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에 추가 입금된 금원의 출처가 원고 산하 대학 교비 횡령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들이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떤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7) 결국 피고들이 D의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 횡령금 중 일부를 그대로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주

판사최창훈

판사김진환

별지

- 1) 원고는 이 법원의 2023. 12. 4.자 석명에 대하여 2023. 12.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 금액 70억 원은 모두 허위공사를 통해 교비를 횡령한 금액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1, 4쪽), 2023. 12. 13. 이 법원 제9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임을 전제로 주장하였다.
- 2)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한 기존 청구(피고들 산하 대학교들에 귀속된 D의 횡령금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로 주위적 청구(피고들 산하 학교법인 총장들이 D의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 횡령행위 가담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며, D, 피고 B에 대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3)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경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 4) 위 검토보고서 작성자도 "본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정보나 발견사항의 적정성이나 완전성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기록 제2권 501쪽 참조).
- 5) 원고 소송대리인은 회계감정을 통하여 원고 산하 대학교 교비 횡령피해금 중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로 흘러들어간 금원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D의 위 횡령범행 당시 작출된 회계자료들 역시 기본적으로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것들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회계감정결과 역시 신빙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